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 정 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 승 로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유 찬 중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
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현행 「건축법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외에 지
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
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건축협정은 필지규모가 영세하거나 불규칙적인 저층주거지에서
효과적인 정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, 주민 자율적으로
노후·불량주택의 신축·개량을 통해 양호한 주거지가 형성될
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